

종교시민문화연구소 규정

개정 2017. 6. 1.

전문

종교적 다양성의 증대로 인해 전 지구사회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과 상호불신, 갈등과 폭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는 물론이고, 지역적 사회 문화전통의 다양성에 기초한 현대사회의 보편적 시민윤리 및 시민문화의 개발 및 정착을 위해 인류문명의 종교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종교시민문화연구소를 설립한다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부설 종교시민문화연구소(Institute for Religion and Civic Culture, 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목적)

본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SSK사업을 기반으로 한국적 및 세계적 시민사회에서 종교의 역할, 종교적 다양성, 종교시장정책, 다문화사회의 질적 발전, 해외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구한다.

제3조(소재지)

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구사회에 부합하는 시민윤리 및 시민문화의 개발
2. 종교적 다양성과 시민사회의 변화
3. 종교정보화를 위한 디지털기술개발
4. 한국연구재단 내 글로벌협력, 토대연구, 일반공동연구, SSK 사업, HK 사업
5. 공동연구, 학술회의 등을 통한 국제협력사업
6. 본 연구소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자문, 기술이전, 정책진단 등의 관산학협력 사업
7. 본 연구소 내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

제2장 조직 및 구성원

제5조(구성)

-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, 연구위원, 연구보조원, 행정 및 기술요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본교 대학 교수 및 그에 준하는 자로서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- ④ 연구보조원, 행정 및 기술요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, 연구위원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- ⑤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기술요원은 연구위원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연구소장)

① 연구소장은 현직 연구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속대학(원)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설립 후 연구소장을 최초 임명할 경우에는 소속대학(원)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조직)

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. 단,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는 필요적으로 둔다.

1. 운영위원회
2. 평가위원회
3. 교육위원회
4. 행정지원팀
5. 연구팀

제3장 운영

제8조(운영위원회)

①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조직
2. 운영체계 및 기본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의 연구방향 조정
4. 연구위원, 연구보조원, 행정 및 기술요원의 임명 등 인사 관련 사항
5. 예산 및 결산
6. 연구소 관련 제 규정(내규 포함)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연구소 관련 제 규정(내규 포함)의 제정에 관한 건은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.

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고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평가위원회)

① 본 연구소의 주요 정책사항 및 연구계획에 관한 자문과 사업성과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로 연구소장이 위촉한 3인과 연구처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평가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고, 연구소장이 소집한다.

⑤ 평가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.

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각 참여연구위원의 연구실적 평가
2. 우수 연구업적의 선발
3.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연구소 운영에 대한 평가
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자문

제10조(교육위원회)

① 본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중화,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

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교육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- ③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 - 1. 연구결과물의 실용화 방안
 - 2. 연구결과물을 활용한 대중적 교육프로그램 운영

제11조(행정지원팀)

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연구비 관리
- 2. 기자재 구입 및 관리
- 3. 연구지원 행정업무
- 4. 세미나, 워크샵, 심포지엄 개최 등의 행정지원
- 5. 국제공동연구 및 협동연구의 대외협력 관련 행정지원
- 6. 홈페이지의 운영
- 7. 기타 연구소 운영을 위한 총무 업무

제12조(연구팀)

본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위원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연구박사, 연구보조원, 연구조교로 구성된 연구팀을 둘 수 있다.

- 1. 연구박사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종교관련 논문을 출판한 자를 우선하며, 본교 연구박사 임용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- 2. 연구보조원 : 학사과정 이상의 자
- 3. 연구조교 : 조교의 임용에 관한 본교 규정에 의한다.

제4장 재정 및 기타

제13조(재정)

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- 1. 교내연구비
- 2. 대외연구비
- 3. 기타수입

제14조(연구비 집행)

교내연구비의 집행은 본교 규정에 따르고, 대외연구비의 집행은 주관 기관의 집행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5조(보칙)

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